

예산총칙

2023년도 추가경정 제2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2,539,967,156	76,199,015
일반회계	2,116,403,817	63,492,115
특별회계	423,563,339	12,706,900
공기업특별회계	197,514,620	5,925,439
상수도사업	81,461,495	2,443,845
하수도사업	116,053,125	3,481,594
기타특별회계	226,048,719	6,781,462
공유재산관리	83,572,438	2,507,173
의료급여기금	10,887,477	326,62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17,030	511
교통사업	55,614,720	1,668,442
철도건설사업	44,639,114	1,339,173
폐기물처리시설	2,827,383	84,821
도시재정비촉진	1,376,501	41,295
도시개발	4,031,094	120,933
공공시설등 설치	348,438	10,453
문화시설건립	919,590	27,588
도시재생	18,099,669	542,990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3,715,265	111,45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41,386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5,066,775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3) 내부유보금 74,611천원

제 7 조 202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7,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